

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. 9. 10 선고 2018가단224158 판결 [부당이득금반환]

전 문

원고(선정당사자)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

담당변호사 강영수, 이기영, 이준민

피고부산광역시 수영구

소송대리인 B, C

변론 종결2020. 7. 23.

판결 선고2020. 9. 10.

주 문

1. 원고(선정당사자)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(선정당사자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(선정당사자) 및 선정자들(이하 '원고들'이라 한다)에게 10,822,000원 및 그 중 7,428,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9. 5. 31.까지는 연 1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, 나머지 3,394,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2020. 5. 18.1)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, 이 사건 2020. 5. 1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

송달일부터 부산 수영구 D 대 1,646㎡(이하 '이 사건 대지'라 한다) 중 별지 도면 표시 1, 2, 3, 17, 16, 15, 14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'ㄱ' 부분 70㎡(이하 '이 사건 계쟁부분'이라 한다)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206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 지상의 E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의 구분소유자들이고, 피고는 이 사건 대지와 인접한 F 도로 36,443.2㎡(이하 '이 사건 도로'라 한다)의 공유자이다.

나. 이 사건 대지는 1970. 7. 4. 부산 동래구 G 임야 5,646평에서 D 임야 563평으로 분할되었고, 1977. 6. 21. 면적 환산 및 지목 변경으로 대지 1,861㎡로 변경되었으며, 1980. 6. 26. 215㎡가 H로 분할되어 지금의 면적(1,646㎡)이 남게 되었다.

다.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도로와 함께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 및 인근 주민들의 교통에 제공되고 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3, 4호증,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1)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,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,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,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,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,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,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,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,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,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·배타적인

사용·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, 타인[사인뿐만 아니라 국가,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. 이하 같다]이 그 토지를 점유·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,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 그리고 토지의 특정승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사용·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(대법원 2019. 1. 24.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).

2)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, 앞서 든 증거들과 을나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- ① 이 사건 대지의 전 소유자인 I은 1976~1977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,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이 사건 도로의 폭이 4m에 불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도로의 경계선에서 1m를 후퇴한 지점을 건축선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다.
- ② I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이 사건 계쟁부분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여 도로의 경계로 삼았다.
- ③ 이 사건 계쟁부분은 이 사건 도로의 폭을 확장시키는 형태로, 이 사건 도로에 바로 인접하여 가로는 좁고 세로로 길게 늘어진 형태에 길모퉁이 부분이 좀 더 넓고, 그 면적은 이 사건 대지 전체 면적의 4% 정도에 불과하다.
- ④ 이 사건 건물의 남측 연수로 쪽으로는 좌회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,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은 이 사건 계쟁부분과 이 사건 도로를 주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다.

3)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, I은 이 사건 건물의 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을 진입도로로 제공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,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이 사건 계쟁부분과 이 사건 건물 사이에 담장을 설치하여 도로의 경계로 삼았다. 이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이 사건 건물의 거주자들과 인근 주민 등 일반 공중을 위하여 통행로로서 무상 제공하면서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. 또한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각 구분소유건물을 전전 양수한 원고들은 그 대지권의 목적인 이 사건 대지의 특정승계인들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

같은 사용·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·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 사용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오윤경

별지

1) 2020. 5. 18.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'2020. 5. 16.'은 오기로 보인다. 이하 같다.